#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73

발의연월일: 2024. 11. 21.

발 의 자:정성호·최기상·김정호

박해철 • 박희승 • 윤후덕

이연희 · 안규백 · 문진석

김영진 · 조계원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 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을 경 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말정산한 근로자와 같은 원천정수대상자가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일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이 아닌 연말정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기한의다음 날인 다음 연도 3월 11일로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한 납세자보다 경정청구의 기한이 빠르게 도래하는 실정임.

한편 근로자가 과소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로 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을 현행 원천 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법률 제 호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5항 후단 중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원천징수대상자 중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소득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5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	
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	
법」 제93조제1호・제2호, 제4	
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	
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	
(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	
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	
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 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 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 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 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 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 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 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 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제5 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 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 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

"어마거시게에 ㄸㄴ 이키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
수세액의 납부기한(원천징수대
수세액의 납부기한(원천징수대
수세액의 납부기한(원천징수대 상자 중 「소득세법」 제73조
수세액의 납부기한(원천징수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 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 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 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⑥・⑦ (생 략)

이 있는 자는 해당 소득의 법
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⑥·⑦ (현행과 같음)